

# 수능 D-6, “수험생 유의사항 확인하세요”

광주·전남 83개 학교 1243실 운영 수험생 지난해 대비 1245명 증가 전자기기 불가 등 규정 준수해야 “걱정없이 최고의 실력 발휘하길”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는 신분증 지참이 필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안되는 등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7일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4일 실시하는 수능의 광주지역 시험장은 38개 학교 612개 시험실로 시험장마다 당일 환자 대비용 별도시험실 1실과 미응시자 대기실 1실을 각각 마련해 총 688개의 시험실이 운영된다. 전남지역의 경우 45개교 1243개 시험실에서 진행된다.

광주·전남의 수능 응시자는 각각 1만 6846명(재학생 1만1684명·졸업생4420명·기타742명), 1만3941명(재학생1만1192명·졸업생2355명·기타394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광주는 4.7%(757명) 증가했고 전남지역 또한 3.6%(47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들은 수능 전날인 13일 오전에 수험표를 교부받을 예정이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소속(출신) 학교에서 교부받고, 교육청에 접수한 검정고시·타 지역 고교 졸업 수험생은 광주교육연구정보원에서 수험표를 받는다.

수험표를 교부받으면 해당 시험장을 직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7일 조선평대부속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음을 쫓기 위해 복도에서 막바지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

접 방문해 출입구와 교실 위치 등을 확인해야 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금지이므로 밖에서만 확인해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수험표와 함께 사진이 부착된 유효 기간 내 신분증을 가지고 오전 8시 10분 전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

일한 사진, 신분증을 지참하면 오전 8시 이전에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사진이 없을 경우에도 임시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수험생은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수능에 응시해야 한다.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는 신분증 지참이

필수다. 이때 모바일 신분증으로는 안되며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태블릿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은 소지가 불가능하다.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 가능하며 시계도 아날로그 시계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청기나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개인적인 사유로 필요한 물품은 감독관의 허가 후에 휴대할 수 있다.

한국사 과목은 필수이므로 반드시 응시하고, 4교시 선택과목은 순서에도 신경 써야 한다.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시험지만 올려두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절대 2개의 시험지가 동시에 책상 위에 있어서는 안된다.

문제를 다 풀 뒤에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시험종료령이 울린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즉시 필기도구를 내려놓고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전체 시험장과 시험실 현장 점검을 3차례 이상 실시하고 방송시설 등 제반 시설을 보완해왔다.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는 장학관 이상의 시험장 점검관을 파견해 수능의 안정적 시행과 수험생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종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능 시행을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들과 수능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등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수험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조치할 것이므로 수험생들은 걱정없이 시험에 응시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 ‘입동’ 광주·전남 첫 서리 관측, 아침 영하권 추위 “게임 지면 입수” 장애인 숨지게 한 20대에 항소심도 중형 구형

큰 일교차... 건강관리 유의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인 7일 광주와 전남 지역의 아침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으며, 광주에서는 올해 첫서리가 관측됐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전남 내륙 지역 아침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5도 내외로 떨어져 영하권 추위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화순 백야면이 영하 2.5도로 가장 추웠으며 장흥 유치면은 영하 0.8도, 순천 영하 0.5도, 곡성 영하 0.3도, 광주공항 영하 0.2도 등을 기록했다.

이날 광주에서는 올해 첫서리가 관측됐

는데, 지난해보다 하루 빠르고, 평년보다는 이틀 늦게 확인됐다.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영하권 추위는 벗어나지만 당분간 구름이 많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8일 아침 최저기온은 4~13도, 낮 최고기온은 18~20도를 보이겠고, 9일은 아침 최저기온 6~13도, 낮 최고기온은 18~21도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0~15도 내외로 매우 크게 벌어질 것”이라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준명 기자

살인 혐의 기소...1심서 징역 4년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대에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7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20)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24분께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를 겪는 B군을 바다로 밀쳐 숨지게 한 혐

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포함한 10대 청소년 3명과 낚시를 하자며 선착장으로 간 뒤 가위바위보로 바다 입수내기를 했다. B군은 수영을 하지 못하는 데다 예상 가능한 패턴으로만 가위바위보를 했고 이들은 B군이 가위바위보에서 지자 강제로 바다로 밀쳐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일행이었던 다른 10대 공범들은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 1심 살인 무죄를 취소하고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원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1심과 같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날 가능성을 고려해 폭행치사 혐의로도 기소했다고 공사사실 일부를 변경했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진하게 지냈던 동생이 숨진 데 대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유족과 합의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 선고는 오는 12월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민현기 기자

## 고향 선배 살해 후 유기한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16년

살인·사체 유기 혐의 기소

함께 술을 마시던 고향 선배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7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A(54)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고흥군 봉래면의 한 공터에서 고향 선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주변 공중화장실 공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범행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기에는 하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1심 형량이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1심에서 검사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유족들이 피고인이 공탁한 돈의 수령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기준 최고형인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민현기 기자

## 일제 미쓰비시 탄광 강제동원 피해자, 5년 7개월만에 승소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그룹 머티리얼 소유 탄광으로 끌려가 강제노동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낸 지 5년 7개월여 만에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 부장판사)는 7일 별관 205호 법정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쓰비시그룹 계열사인 미쓰비시 마테리알(미쓰비시 머티리얼·옛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4명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하고 나머지 5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사망해 원고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이다. 이들은 피해자가 받아야 할 위자료의 상속 지분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당

시 한반도 탄광 37곳과 군수공장을 운영하며 조선인들을 대거 강제동원, 일본의 침략 전쟁에 군수품을 제공했다.

피해자들은 1942년부터 1945년 8월 사이 일본 후쿠오카현 미쓰비시 이즈카 광업소 나마스카 탄광 등에 강제로 동원돼 노역 생활을 강요받았다.

피해자 중 3명은 현지에서 사망해 조국으로 귀국하지 못했고, 해방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온 피해자 일부는 탄광 노동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질병에 시달리다 사망하기도 했다.

특히 피해자 중 한명은 화순군에서 임신한 상태로 일본 경찰에 끌려가 탄광에서 노역을 강요당했고 1943년 1월 현지에서 숨졌다.

낮선 땅에 끌려가 강제노동에 시달린

이들은 담요 한 장으로 겨울을 지내고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지만, 아무런 임금도 받지 못했다.

일제강제동원사민모임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심의·결정통지서 심의 조서 등을 근거로 유족과 함께 지난 2019년 4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제 송달 소송 서류를 일본 정부가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5년 7개월여간 지연됐고 이날 1심 선고가 났다.

2019~2020년 제기한 15건 중 패소가 확정된 1건(스미세기홀딩스)을 제외한 14개 사건이 현재 1·2심에 계류 중에 있으며 이날 선고로 13개 사건이 남게 됐지만 여전히 소송은 몇년째 공전하고 있다.

민현기 기자